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병역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지방병무청장이 확인신체검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확인 신체검사 대상자의 진료기록·치료 관련 기록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,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병역법」이 개정(법률 제 21769호, 2026. 6. 9. 공포, 12. 10. 시행)됨에 따라, 확인신체검사에 필요한 진료기록 등 자료요청 사유 및 범위,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처분 취소 절차 등을 정하고,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관한 권한 위임에 따른 업무처리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

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법에 신설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확인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를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·운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 정

비(안 제63조, 제135조의3 및 제156조)

나. 사회복지무요원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 명확화(안 제65조의6)

다.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자료요청 범위 및 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른 병역처분 취소 절차 등 구체화(안 제155조의2)

라. 병역명문가 선정사무 위임 근거 마련 및 업무처리 권한 명확화(안 제156조 및 제163조2)

마. 전시 중앙병무사범방지대책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(안 제169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3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5조의6제5호 중 “복무지도교육”을 “복무지도교육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, 교육”으로, “하거나”를 “또는”으로, “태만이”를 “태만히”로 한다.

제135조의3제6항 중 “법 제3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의2제3항”으로 한다.

제155조의2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5항에서 “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”란 제1항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, “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”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제155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: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: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진료이

력에 관한 자료
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장: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 조제에 관한 자료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학교의 장: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학교 생활기록 및 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

5.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사령관: 법 제65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 변경 심사에 관한 자료

제155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병역처분을”을 “병역처분 등 조치를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3호(중전의 제2호) 중 “제1호”를 “제1호 및 제2호”로 한다.

2. 현역병(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할 것

제156조제1항제3호 중 “법 제31조의2제2항”을 “법 제31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7. 법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선정, 선정 제외
및 선정 취소

제163조의2제1항 중 “병무청장”을 “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병무청장”을 “지방병무청장”으로, 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”을 “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병무청장”을 “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6항(중전의 제5항) 중 “제4항”을 “제5항”으로 한다.

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, 선정 제외 또는 선정 취소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

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병역명문가증 및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제169조의2제1항 중 “국회사무처·법원행정처·외교부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경찰청·국세청”을 “국회사무처·법원행정처·재외동포청·행정안전부·보건복지부·고용노동부·경찰청·국세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3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· 감독 범위) 병무청장은 <u>법 제31조의2제2항</u> 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·감독할 수 있다. 1. ~ 4. (생략)	제63조(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· 감독 범위) ----- <u>법 제31조의2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제65조의6(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) 법 제33조제2항제7호에서 “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1. ~ 4. (생략)	제65조의6(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4. (현행과 같음)
5.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, 직무교육 및 <u>복무지도교육</u> 중 대리참석 <u>하거나</u> 무단으로 지각·결석하는 등 교육을 <u>태만이</u> 한 경우	5. ----- ----- <u>복무지도교육</u> 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거나, 교육 --- <u>또는</u> --- -- <u>태만히</u> -----
제135조의3(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) ① ~ ⑤ (생략)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도	제135조의3(사회복무요원 복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람의 소집해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 ⑥ -----

불구하고 법 제31조의2제2항에
따른 복무관리·감독이나 법 제
4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과
정에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
사람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5항
의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
편입할 수 있다.

⑦ (생략)

제155조의2(확인신체검사 대상
등) ① (생 략)

② 지방병무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은 법 제7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과 본인이나 관련자 면담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확인신체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확인신체검사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다.

----- 법 제31조의2제3항 -----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55조의2(확인신체검사 대상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(2)

-----.

이 경우 법 제77조의2제5항에서 “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”란 제1항 각호의 경우를 말하며, “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범위”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③ ~ ⑤ (생 략)
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기관
의 장: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
진료기록부등

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
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:
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양
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
한 정보 중 진료이력에 관한
자료

3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62조에
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
장: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요
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
관한 정보 중 약제의 처방 및
조제에 관한 자료

4. 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
학교의 장: 같은 법 제25조에
따른 학교생활기록 및 「학교
보건법」 제7조의3에 따른 건
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

5. 각 군 참모총장 및 국군의무
사령관: 법 제65조제1항제1호
및 영 제137조제1항제1호에
따른 신체검사 및 병역처분
변경 심사에 관한 자료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지방병무청장은 제5항의 고발에 따라 병역면탈행위가 위법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그 병역면탈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<신설>

2.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병역면탈행위에 근거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, 법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할 것

⑥ -----

----- 병역
처분 등 조치를 --.

1. (현행과 같음)

2. 현역병(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)으로 복무 중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되거나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인 경우에는 해당 군 참모총장 또는 소속 군부대의 장에게 그 처분의 취소와 재복무를 요청하여 남은 복무기간을 마치도록 할 것

3. 제1호 및 제2호-----
--

⑦ (생략)

제156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
병무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
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
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에게
위임한다.

1. 2. (생략)

3.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
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·
감독

4. ~ 6. (생략)

<신설>

7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163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 및
선정 취소 절차) ① 병역명문가
선정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병
역명문가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
신청서를 포함한다)를 병무청장
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②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
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
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병

⑦ (현행과 같음)

제156조(병무행정사무의 위임) ①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법 제31조의2제3항-----

--

4. ~ 6. (현행과 같음)

7. 법 제82조의3제1항 및 제2항
에 따른 병역명문가의 선정,
선정 제외 및 선정 취소

8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163조의2(병역명문가 선정 및
선정 취소 절차) ① -----

----- 지방병무
청장(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.
이하 이 조에서 같다)---.

② 지방병무청장-----

역명문가 선정 제외 또는 선정
취소를 하려는 경우 필요하면
제163조의4에 따른 병역명문가
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
있다.

③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
항에 따라 병역명문가를 선정하
면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
결과를 통지해야 한다.

<신 설>

④ 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3제1
항에 따른 병역명문가 선정과
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선정 제
외 및 선정 취소를 판단하기 위
하여 필요한 자료를 각 군 참모
총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
정한 사항 외에 병역명문가 선
정 및 선정 취소 절차에 필요한
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하여 고시
한다.

심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-
---.

③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2조의
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역명
문가로 선정, 선정 제외 또는 선
정 취소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
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
한다.

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병
역명문가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
여 병역명문가증 및 병역명문가
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

-----.

⑥ ----- 제5항-----
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인력정책과	
연 락 처	(02) 748 - 5139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41